

## 제 83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1년(1958) 6월 2일 상오 10시 35분
2. 폐 의: 단기 4291년(1958) 6월 2일 하오 12시 10분
3. 장 소: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부의장 정 응 표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의장 김 삼 성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서무과장 차명균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제 81회 제 2, 3차 회의록 통과
- 2) 제 82회 회의록 통과
- 3) 청원서처리결과 보고
  - 향동, 해안동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 문복만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 보광동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 유달중학교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 ◆ 부의안건

- 1) 단기4290년도 목포시 각종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일반 회계
  - 수도 특별회계
  - 동정 특별회계

-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 재건 주택 특별회계
- 교육 위원 특별회계

## 8. 토의 사항

### ◎ 제 81회 제 1, 2차 회의록 통과

장건식 간사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 제 82회 회의록 통과

장건식 간사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 각종 청원서 처리결과 보고

- 향동, 해안동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이춘흠 건설과장- 집행부로 이송된 본 진정서에 대하여는 현금의 재정형편으로 즉각 착수는 곤란한 문제이고 앞으로 호별세 2기분이 징수되면 해결 지으려 합니다.

- 문북만씨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 보광동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 유달중학교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 ◇내무위원장 김 일 섭

- 전기 2건은 목하 조사도중이오니 차후보고 하렵니다.

- 이정권 의원 참석

### ◎ 강영락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대 집행부 질문요지의 건

### ◇간사 장 건 식

- 요지서 낭독

### ◇강 영 락 의원

- 구두설명

◇부의장 정 응 표

- 차기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균 의원 긴급동의

- 수일 전 재목 언론기관인 목포일보와 주간항도 기상에 보도된 바 있거니와 상대투쟁요원 일동과 당시의회 측에서 상광 하여 전남대학교학처장의 면회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완강히 거절당하였든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교학처장이 말하기를 도의원, 시의원 놚들이 상대문제를 관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였으며 당일 백 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우리 일행이 형언할 수 없는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내려온 것이다. 3백만 도민과 13만 시민 대변자인 도·시의원을 모독한 무지 무식한 교학처장을 하루속히 추방하여야 될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로서 전남대학 총장, 상대학장, 교학처장 3인의 파면 건의를 제출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부의장 정 응 표

- 참고로 말하나 김성균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전기 3인의 파면건의문제는 타 공무원과 달라서 교육법에 저촉을 받는 기준이 있는 모양이니 신중을 기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김 상 대 의원

- 김성균 의원의 동의 절대 찬성한다. 교학처장이 말한 학교역원이 아니면 상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당일에 만약 무장경관이 출동하여 제지를 안시켰더라면 우리 일행은 위기에 봉착할 뻔하였다.

◇강 영 락 의원

- 동의에 찬성한다.  
- 헌법제 27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 공무원 소환권도 있는 것이다.

◇부의장 정 응 표

- 건의안 작성에는 법에 저촉 안될 정도로 작성할 것을 의장에 일임하여주

도록        김성균 의원의 동의에 첨가 하여주면 쓰겠다.

- 동의집 수락(재청)이 있어 김성균 의원 긴급동의의 표결결과는 만장 일치로 가        결되었습니다.

◇김 상 대 의원 긴급동의

- 금차 회기의 정기의회는 단기 4290년도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이에 수반한 필연적인 시정감사의 실시가 필요할 것이니 법에 의한 대 집행부 통고기간이 경과한 내 6월 9일부터 집행부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의장 정 응 표

-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제시한 대로 3개 반으로 편성하되 각기 부서 담당은 지원제로 하게되면 일개반에 편중될 우려가 있으니 각 반 5명씩 추천제를 채택할 것을 선언하다.

- 시정감사반 편성 추천상황

- 제 1반: 김경인, 조양순, 김상대, 임석희, 김성균 의원
- 제 2반: 김일섭, 박두순, 정응표, 강영락, 천철수 의원
- 제 3반: 김창희, 김상대, 명남철, 이정권, 김남진 의원

◇부의장 정 응 표

- 부의 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김 경 인 의원

- 각 안건 당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여 제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의장 정 응 표

- 산회를 선언하다.

( 하오 12시 10분 현재 )

위 회의록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6월 5일

시의원 임 석 희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83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1년 6월 7일 상오 10시 40분
2. 폐 회: 단기 4291년 6월 7일 하오 2시 15분
3. 장 소: 목포 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천철수 의원
6. 출석 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청학무과장 조성덕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각 청원서 심의 결과보고
- 2) 탄원서 접수 상황보고
- 3) 강영락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한 질문요지의 집행부 답변

### 8. 토의사항

#### ◎ 각 청원서 심의결과 보고

#### ◇내무위원장 김 일 섭 보고

- 1) 문복만씨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는 당시의 사무취급자 이민호씨의 증언을 청취한 연후 결정하기로 일응 보류하여 두었습니다.
- 2) 보광동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는 명년도 예산에 감안하여 계상선처토록할 것을 조건부로 집행부에 이송기로 하였습니다.

- 3) 유달중학교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는 사전 도당국과 절충한 이후 조치하기로 보류하여 두었습니다.

◎ 탄원서 접수 상황보고- 대 건설과 도시계

◇서기 박 찬 대

- 낭독

◇김 경 인 의원

- 소개 발언

◇의장 김 삼 성

- 내무분과 위원회에 회부 선언하다

◎ 강 영 락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한 질문 요지의 집행부 답변

◇사회과장 박 규 성

- 1) 하계 보건 위생대책에 대하여는 일전에 실시하였던 연막소독이 일기도 적당하였고 기계도 순조로워서 원만히 실시되었다고 사료되는 바이나 고지대에 위치한 죽교동은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어서 부득이 그 혜택을 주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시 자가소독의 려행과 시로서는 방역대책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 2) 분뇨 수거문제는 저반에 자동차의 고장으로 약 일주일간 운휴상태이였으나 그 후 수선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계속 수거 중에 있으니 현금은 대상분뇨가 없어서 차가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지문제 되는 것은 수거료를 30원씩 징수하는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3) 천주교로부터 배부 받은 구호물자할당에 있어서는 각 동장에 지시하여 출신 시의원들의 합의를 받도록 하였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부대하는 잡부금 징수 등은 절대 없도록 강력 단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궐원동장(영해동) 보궐선거문제는 법에 규정된대로 사퇴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총선거 관계로 인하여 지진 되었으나 즉시 공고하여 금월중으로 실시하려 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시장 답변

- 해안경비대사 신축 문제에 대하여 상경출장당시 세관국장을 심방 교섭한 결과를 보고하였음

◇김 성 균 의원 질문

- 1)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자택의 주위는 야채를 재배하는 전원인데 그 재배광경을 보면 순전히 인분만으로 가꾸기 때문에 안심하고 목포산 야채는 사먹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없는가?

- 2) 진개 (먼지와 쓰레기) 처리에 가일층 노력하여주기 바란다.
- 3) 용당도선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실정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 4) 앞으로 이르면 합병에 대한 전망과 시가지 확장계획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 시장 답변

- 1) 야채 재배에 인분을 사용한다함은 금비 부족으로 인한 필연적인 귀결로서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 2) 도선장 특별회계 문제는 방금 철선구입에 대한 기채 승인도 확정되어 목하 계약 체결도중에 있으니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이르면 합병 문제는 동 면의회의장을 상면하고 내면공작중에 있습니다.

◇정 응 표 의원 질문

- 1) 죽교동은 종전에는 오물소제수수료 불납 동으로서 무료로 자유철거를 하였는데 현재는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각호의 변소는 넘는 실정이나 돈이 없어 철거를 못시킨 형편이다.

- 2) 상수도 공사의 진도상황을 알려 주기바란다.

- 3) 공채의 일반소화율이 2할밖에 안되었다는데 이의대책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 4) 재목 언론지의 보도(목포에 있는 신문의 보도)도 있었지만 가로등 기존시설부분에 대한 활용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하 시장 답변

- 1) 상수도공사의 진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반에 지상보도도 있었지만 OEC의 기술자 「월콘송」이란사람이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배수선로를 단축하기 위하여 영산강의 도강론과 기차선로를 타자는 론을 보고하였다하나 이 양론은 도저히 불가능한 안으로서 본인이 저반 상경시 원경재조정판에 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계획안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공채소화독려문제는 당 시민은 타 도시와 비교하여 향토열이 지극히 박약한 곳입니다. 일반소화 성적이 불량하다함은 여기에 큰 원인이 있으며 총선거 사무문제 등으로 일시적 독려가 불철저하였으나 금반의 시정감사기간이 경과하면 전체 청원(전 시청 직원을 말함)을 총동원하여 극력책임제 독려를 가할 작정입니다.

- 3) 가로등활용 문제는 즉시 일제 조사하여 그 보호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김 삼 성 질문

- 1) 정호소독의 예산조치 계상여부 여하

- 2) 행복동 공동 변소부근의 진개 방치이유 및 콜롬반 병원 옆 등의 진개 산적된 이유와 진개 화물차 한 대 분이 오백원씩인데 이를 수입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3) 가로등 시설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누차 집행부에 진언한 바 있었는데 주무과에 이의 시설 및 가설대장조차 없었다.

◇강 영 락 의원

- 양동의 도로변 인분 탱크에 철조망 시설의 필요성을 느낀다.

- 2) 배수로의 조사는 하고 있는가 여부

- 3) 가로등의 증가설치는 치안확보와 결부함이 필요하다.

◇김 창 희 의원

- 본 의원의 출신구인 동명동 신사대지 매각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본 의

원과 하등의 상의를 하여 본 일도 없고 이에 대한 좌담회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기억되는데 저반(이번)에 오세일 씨와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 이 사건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 볼라고 하여도 이해하기 곤란하오며 200여 세대 동민으로부터 본 의원만이 원망을 사게되는 결과를 맺게된 것이다.

- 그런데 저반에 오씨가 시와 계약한 해(당)대지대금 이백만환을 동민으로부터 300만환을 주어 사십만환은 사례금으로 60만환은 제수수료로 계산하고 합계 백만환을 가산하여 줄터이니 동민에게 넘겨 달라고 하여도 거절당하였던 것이다.

- 그리고 저반에 실시한 5·2선거 당시에는 동명동 주민에게 이와 결부이용 하였다는 등 실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골자는 사정위원회의 사정결과 및 입찰서류의 완비여부와 전 시유재산매각처분에 대한 상세한 점을 알려주기 바란다.

#### ◇이 정 권 의원

- 연막소독을 차후 변방동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다.

#### ◇김 경 인 의원

- 경찰서 수상반 청사로부터 동명동 어업조합까지의 도로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동수 및 앞으로 차에 대한 철거의사 유무여하

#### ◇오 영 락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발언내용인 동명동 대지매도 사건에 대하여 작년도 시유재산 감정당시 관재업무과 계장은 해(당)대지는 매각 안한다는 언질이 있었고 본 의원도 매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유감된 일이다.

- 여기에 정치성이 내포하였다 운운의 말이 있으니 이의 사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될 줄 생각한다.

#### ◇정 응 표 의원

- 죽동 소재 사류지(砂溜池)는 다른 도로까지 파괴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시내 중요한 요소 요소에 쓰레기통을 배치할 의사는 없는가?

◇사회과장 박 규 성 답변

- 김경인 의원 질문의

- 1) 정호와 집단 소독문제는 각 동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하겠습니다.
- 2) 행복동 공동변소 철거 및 진개 처리문제는 당분간 곤란한 형편입니다.
- 3) 진개처리차 휘발유는 1개월 5도람이 소모되는데 1차당 오백환씩 수입하는 대금은 이로써 충당하도록 일임하고 있습니다.

- 강영락 의원 질문의

양동 도로변 인분탱크 철조망 설치문제는 차후 뚜껑을 덮도록 하고 철조망도 시설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김경인 의원 질문의 가로등 문제는 대장도 비치되어 있으며 그 보호책은 근방 주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강영락 의원 질문의

- 1) 가로등 설치에 치안상 결부를 말씀하신데 의결부와 상의하여 선처하겠습니다.
- 2) 하수도 준설작업은 틀림없습니다.

- 정용표 의원 질문의 사류지 활용문제는 즉시 현장을 조사하여 선처하겠습니다.

- 김경인 의원 질문의 해안선 판자집 철거문제는 목 하조사중이니 대책을 수립 하여 선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김창희 의원 질문의 동명동대지 매도에 있어서 90년 10월에 시유재산 매각결의당시 한꺼번에 의결된 것입니다.

- 이의 매도공고는 벽보와 신문지상을 통하여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1차 입찰시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하여 10월 23일에 김순덕에게 낙찰되었습니다.

- 예정가격은 조흥은행에서 백사십칠만환 복덕방에서는 백육십만환과 의회측에서 이백이십만환으로 사정되어 이를 평균분등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이로써 금년 1월 24일에 계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 창 희 의원

- 왜 다른 시유재산과 같이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았는가?

◇강 영 락 의원

- 타 시유재산과 같이 구별하여 개별공지를 안 하여 주었다는 것이 유감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건이오니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 진상을 조사토록 할 것을 정식동의하여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 김 삼 성

- 조사위원으로 김창희, 명남철, 강영락 의원을 지명하다.

◇김 경 인 의원

- 현재경찰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오물차를 시에 이관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창 희 의원

- 국민학교 빈곤아동에 대한 교과서 무상배부를 앓고 있는 이유여하, 그리고 현재 5학년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여하

◇명 남 철 의원

- 한 학급에 매월 오백환씩 징수하는 것을 하처(어디에)에 쓰는 것인지 답

변 하여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외국인이 와서 거리를 다닐 경우 아동들의 도의 교육면에 가일층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 2) 각 학급 담임을 중심으로 한 자모계가 성행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진상과 그 단속 방안여하

- 3) 각 학교 소모품 배정을 중앙교와 변방교를 감안하여 배부하겠다는 교육감의 확약이 있었는데 이의 실시여부를 묻는다.

◇강 영 락 의원

- 각 자모들의 수업중의 교실을 빈번히 출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하히 생각하는가?

◇조 학무과장 답변

- 1) 자모계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고 있다면 시정하겠다

- 2) 교과서 무상배부문제는 만시지감이 불무하다.

- 3) 5월 중순경에 서무과로부터 합의가 돌아와서 반문한 사실도 있었다.

- 4) 교원결원문제는 도학무과 청사화재로 말미암아 늦은감이 있었으나 현재는 과원 (인원초과) 상태이다.

- 5) 국민학교 아동의 도의교육 문제는 저반 교장회의 석상에서 단속한 바 있다.

- 6) 소모품비 배정문제는 균등공평 배부를 조언하고 있다.

- 7) 자모등의 교실출입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아지나 나오는 자모들을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정 권 의원

- 사친회등 예산이 5천만원이고 호부(호별부과) 특부(특별부과) 기타 등을 합하면 물경 2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사친회비를 못 낸다고 하여 학교에 못 가고 있는 것을 학무과장은 진상조사를 하여본 일이 있는가?

- 2) 교육신문과 교육주보를 사친회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 3) 월구아동(학구를 위반한 아동)에 대한 대책 여하

◇조 학무과장 답변

- 1) 사친회비를 안 낸다고 하여 퇴교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2) 교육신문은 교육청에서 중간 역할만 하고 있다.
- 3) 아동월구 문제는 현재 약 80명을 적발하여 각각 수배중에 있다.

◇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

- 용당동 일방도로의 입구인 직물공장 앞 도로는 지극히 경사지에다 좁은 관계로 목포관문으로서 래왕객에 대한 첫인상을 지극히 나쁘게 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를 고치기 위하여 옆 논을 도로로 개조하는데 건의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산회 선언하다.

( 하오 2시 15분 현재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6월 8일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강 영 락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83회 제 2차 목포시의회 의사일정표

### ◆ 보고사항

- 1) 각 청원서 실의 결과보고: 내무위원회
- 2) 탄원서 접수 상황보고: 강지덕 외 16인으로부터
- 3) 강영락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한 질문 요지에 의한 집행부 답변

## 제 83회 제 3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1년 6월 27일 상오 10시 25분
2. 폐 의: 단기 4291년 6월 27일 하오 5시 50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김남진 의원
6. 출석 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서무과장 차영균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제 83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 2) 제 82회 제 2차 의회시 제출하였든 탄원서의 합의 승락서 접수보고
- 3) 진정서접수 상황보고(추기성으로부터)

#### ◆ 부의안건

- 1) 제 4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 2)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각종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 일반 회계
  - 수도특별회계
  - 동정특별회계
  -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 재건축택 특별회계
  -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 3) 단기 4291년도 제 5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단기 4291년도 제 2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단기 4292년도 제 2회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6) 단기 4292년도 제 1회 목포시 도선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목포시유재산 매각 처분의 건
  - 시립목포 병원 병동 매각 처분안
  - 자동차 적재선 매각 처분안
  - 도장창고 매각 처분안
- 8) 목포시유재산 취득의 건
  - 수특창고
- 9) 목포시 교육 위원회 재산취득의 건
- 10) 목포시 교육 위원회 재무조례 심의의 건

#### 8. 토의사항

##### ◎ 제 83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이의 없으므로 통과)

##### ◎ 탄원서의 합의 승낙서 접수상황 보고

서기 박찬대 낭독

##### ◎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 호남동 추기성으로부터 )

서기 박찬대 낭독

##### ◇김 상 태 의원

- 소개 발언

##### ◇의장 김 삼 성

- 내무위원회 회부선언

##### ◎ 제 10회 시정감사결과 보고

제 1반대표

◇김 경 인 의원 보고

- 제 1반에서 담당하 본청의 총무과 호병과 수특을 위시하여 각 동등은 대체적으로 진일보하였으나 제도상 정책적으로 사소한 부분에 시정을 요하는 곳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1. 총무과

1) 청내 200여직원에게 공무원 시원 보증을 받았는데 그 중 보증인 1인이 팔구십 명의 직원을 보증한 사례가 있어 그 재력의 한도 등 의아를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좋은 점도 있다고 보겠으나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2) 남교동 사류지는 오늘 현재까지도 진개가 산적되어 있다. 이의 관리인도 정식채용 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이처럼 방치하는 것은 이해 난이다.

3) 동의 건물 등 재산은 법적수속을 필하여 시유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4) 지도계의 국채 취급에 있어서 그 내용은 정확하였으나 수불대장이 유기 적으로 세밀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졌으며 국채증권 현품을 미교한 액면 을 즉시 교부하여야 될 것이다.

5) 시유재산 매각대금 미수입분을 급속 정리토록 수배하여야 될 것이다. 주 무계에 서는 문서 독촉의 흔적도 없으니 유감이다. 일정한 기일을 정하 여 정식 조치할 것 을 요망한다.

6)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의 지령 및 문서가 석연치 않다. 해당계와 유기적인 체계 를 세우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7) 국고보조 영달지령서 이천만환 짜리가 행방불명 이였다.

8) 각 업자에 물품대를 지불 할 적에는 재무과와 연락을 긴밀히 하여 미수 세금의 징수에 효과를 얻도록 함이 좋을 것 같았다.

9) 도선장 및 청내각차량의 유류대가 상당액이 지불되는데 이의 수불대장 정리에 각별명확을 기하에 주기 바란다.

10) 시장비 중 시설비의 미집행 액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11) 시립병원의 약품수불대장이 불철저하다 .

12) 소방비는 목적세인데 시설비를 소모품비로 이용하였다. 이의 이유는 무엇인 가?

13) 전 경찰서장 영매(누이동생존칭) 결혼 축의금이라하여 금 삼만환이 지

출되었다. 내용을 알아본즉 전 서장의 처제이었다고 하는데 여하한 연유로 이렇게 까지

거액을 지출하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 - 2. 수도 특별 회계

1) 수도료 부과에 있어서 과거에는 계량기가 있어서 그 부과에 정확성을 띄었으나 현금은 종별로 이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오는 것인데 그 예로는 남교동 허모씨 집은 과거에는 월 1300환씩 부과하였는데 김인례라는 사람이 이사와서부터는 월 250씩 이라한다. 이러한 점 모순이 허다하며 특권층과 일반의 구별 없이 정실부과를 배제하여야 될 것이다.

2) 수도료 미징수액이 사백만원이 된다. 이의 대상이 거개 특권층이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징수에 가일층 성의를 경주하여주기 바란다.

3) 국고보조액 3억 일천만원에 3억 2천만원의 결산은 미스(착오)라고 본다. 이의 시정을 요망한다.

4) 상수도용 시멘트 보관료가 1년6개월에 80만원 지불되었다. 시에 창고가 있다면 이 거액은 남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점 중앙에 건의하여 창고 1동쯤 신축할 용의는 없는가?

5) 국고 보조 8억여환중 5억여환이 수입된 상수도 공사를 진척 중인바 이 거대한 액을 휴무(휴관)관제도에 치중하고 타 공사를 천연(일을 지체하거나 미룸)하였 기 때문에 OEC측에서 배수선로변경 운운의 잡음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며 사전에 좀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휴무관은 절반정도 공급시키고 타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면 효과적 이었으리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결론으로 휴무관회사와 삼부토건회사만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 서 의심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 3. 재무과, 호병과

1) 재무과의 세수입에 특단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2) 호적병무과에서 취급하는 제증명을 교부시 시공채를 첨가소화하고 있으나 이 는 사전에 시의회의 양해를 구하여야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 1반 보충보고

◇김 성 균 의원

- (별지와 같이 보고서 참고) 생략함

제 1반 보충보고

◇ 김 상 태 의원

- 1) 관인취급이 너무 조홀(거칠고 차분하지 못함)하여 백지날인을 하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았다.
- 2) 시청직원의 신원보증인이 퇴거한 경우는 여하히 할 것인가?
- 3) 죽동 사유지 관리인은 그 근처 사람을 채용하여야 될 터인데 원거리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을 여하한 이유인가?
- 4) 사유재산 매각 대금의 완징(징수완료)을 촉구한다
- 5) 분청회계는 전별금 내빈접대 등을 극소액으로 절약하고 관사 수리비 등 세심 주의하여 지출하기 바란다.
- 6) 청내확성기 수리비가 2, 3일 간격으로 수만원씩 지출된 사실이 있는데 아연 앓을 수 없으며 의사당비치 연단이 17000환씩 소요되었으니 아니 놀랄 수 없다.
- 7) 향동 시장 전등료가 81,000환이나 된다. 선처하기 바란다.
- 8) 각동 감사결과에 있어서 무안동, 북교동, 산정1구동, 산정2구동은 잘 되었다고 보아지나 서산동은 공채대를 수시 유용한 사실이 있고 남교동은 공채대 15000환씩을 직원이 유용하고 있었다. 영해동 공채 사무가 어떻게 된 셈인지 분간조 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여 감사를 못하고 돌아왔다. 온금동은 총 수해 대책금을 동청사 수리비라 하여 오만원만 공제하고 배부하였다. 끝으로 당시주최로 거행된 권농기념행사에 본 청 주무자급들이 다수 불참하였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차후 사중행사에는 솔선 참가하여 주기 바란다.

제 2반

◇강 영 락 의원 보고

- 1) 추곡수납성적 및 대여양곡 회수율이 극히 불량하며 유식층에서 미납자가 많음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2) 정부양곡 보관은 주무과에서 노력하여 다른 건전한 창고에 옮겨 주기

바란다.

- 3) 산업과의 문서편철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바란다. 예규가 일반서류와 병철 되어 있는 등 조잡하였다.

- 4) 모선도입 사무를 과거 시에서 하든 것을 도에서 직영함은 모순이다. 조속 도에 건의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5) 공 가마니 회수 사무를 무안군에서 취급함은 온당치 못 하다고 본다. 염업의 생산자가 우리 시민이 태반이라고 보아질 적에 옹당히 사무는 목포 시에서 관장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진다.

- 6) 당 시로 보아서는 유달산 녹화 문제가 긴급하다 이에 반하여 임업비 예산이 식복일 기념행사 비에 불과하여 60년생 이상 노송 30 여주 고사한 것을 보았다.

- 7) 연료 문제는 솔선 구공탄 사용을 장려하여 주기 바란다.

- 8) 당 시에 배당된 종모우 한 마리의 관리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 9) 흡관 제조 상황 및 수압 검사차 천철수, 김일섭 의원과 동도상경 하였던 결과보고 있었음(상세 초안 참조)

- 10)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광주시가 목포보다 더 잘되었다는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다. 이 원인은 나변에 있는가?

- 11) 역전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어서 실지 검사한 결과 오차는 없었다.

- 12) 요즘 늘어가는 수도전 파괴사례를 철저히 제재하여 주기 바란다.

- 13) 수원지 관리문제는 역시 녹화운동을 노력하기바라며 최근 그 부근에 암장 사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 자칫하면 공동묘지화 할 우려가 있으니 발견 즉시 발굴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 14) 재무과 징세성적은 본도4시중 우위를 절하고 있음은 그 노고를 찬양하는 바이나 그 반면에 시민의 여론과 노성이 있는 상대성 원리가 개재한다는 것을 알고 선처하기 바란다.

- 15) 인사문제에 있어서 시에 정식통역 일명을 채용하기 바란다.

#### ◇의장 김 삼 성

- 20분간 휴회를 선언하다. (하오 1시 정각)

- 속개 선언하다. (하오 1시 20분)

◇박 두 순 의원 보고

- 1) 축산협동조합을 감사한 결과 90, 91 양년도 사료배급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앓고 정실 배급이 태반임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원인을 들은즉 자금난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나 축동 조합자체가 임의 처분하여 1, 2인의 후생사 업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2) 공동하양장에 해사대서소를 비공식 대여 한 것을 보고 즉시 철거시켰다.

- 3) 재무과에 결손처분 할 액수가 상당 건수에 달한바 조속 정리하여 주기 바란다.

- 4) 대성1구, 양동, 산정3구동 등 거개 잘 되었으나 대성2구동은 구태의연한 현상이다.

- 5) 향동 시장은 잘 되었다.

- 6) 남교동 시장

· 사무적으로 전연 모르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정리가 잘못되었다.

· 사용료를 15일간 이상 유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 7) 도선장

· 유류를 매일매일 외상으로 갔다 쓰는 관계로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다.

· 현금 기채 수속중 자동차 적재선을 소형으로 만들고 그 잔액으로 삼학호 같은 객선을 증치하면 도선장 수입의 병적존재인 모-타선 같은 것을 방지하리라고 보아진다. 의견으로 말한다.

◇김 일 섭 의원 보고

- 1) 어업세의 징수부진은 부과의 불공평에서 오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어선이 많은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별하여 적정부과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 2) 징세직원은 어디까지나 친절분위를 견지하기 바라며 고만(건방진)한 태도를 버리도록 단속하여 주기 바란다.

- 3) 귀속재산 상환율이 타시군에 비하여 고율인 것 같으니 관계 당국과 교섭하

여 저율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 4) 재무과 근무하는 모계장이 연동시장 주임으로 전임하였는데 현금의 근무태

도는 여하한가?

- 5) 가축시장의 확장을 요망한다.
- 6) 공유수면 매립의 허가책임한계를 묻는다
- 7) 해수욕장 건물이 없어졌다. 이 책임은 어디가 있는가?

◇천 철 수 의원 보고

- 1) 가축시장에 수용능력이 현재 15두밖에 안되는데 저번에 50두가 수용된 것을

보았다. 조속증축을 요망하며 전기 수도시설의 긴요성을 느꼈다.

- 2) 휴무관 관계 감사차 상경 결과보고(내용생략)
- 3) 수원지 간수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차하고 있는 곳이 있다.
- 4) 가로등을 일본송 배수지 및 급커브에 가설 하여줄 수 없는가?

◇김 일 섭 의원 추가보고

- 1) 도에서 일반수요자에게 석유를 직배하고 있는 모양인데 차후 상공계에서 구

매표 등을 배부 할 용의는 없는가?

- 2) 양곡대추징금이 거액에 달한 모양인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제 3반대표

◇이 정 권 의원 보고

- 교육청 관계(서무과 소관)

1) 4290년도 초등교육 비 보조 5,648,629환의 이월액이 있었는데 교직원의 봉급 지분을 지연시켰으며 그 이유는 경상비로 유용 시키기 위해서였다.

2) 재정부족 보조 및 보건비보조 6,560,000환이 이월하여야 할 것인데.....

3) 일천여 만환의 영선비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상비로 유용시켰다.

4) 91년도 특별부과도 신설국민학교의 신축을 전제로 그 예산을 통과 시켰든

것인

데 이 역시 엉망진창인 것이다. 그 예로서 6월 14일 현재 호별세 부과금 징수액이

12,460,462환인데 경상비 지출액이 17,127,437환으로 결국 4,666,775환을 특별에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은 이러한 수단으로서 의결부를 농락하고 있으며

며 수시변동으로 발등에 불만 끌려고 하는 것이다.

- 그 외 사무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 1) 작년도 두탄(콩탄) 90만환 어치를 구입하였는데 입찰한 형적 조차없는 것이며 모든 경비의 경리내용 수입, 지출, 잔고의 식으로 예산을 무시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2) 그리고 4월부터 익년 1월까지의 주식 접대비가 무려 3백 13만 환이나 지출되었다.
- 3) 교육청직원의 위로출장여비는 타항목에서 유용하여서까지 지출하면서 교원들의 정당한 출장여비는 지급않고 있었다.
- 4) 토지수득세환금 오만여환이 90년 3월 20일자 지령된 것을 8월에서 입금시켰는가 하면 그 반비례로 돈을 지령에 앞서 일개월전에 입금시킨 예등 작란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 5) 교비 중 아동 급식비에서 도정감사반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 6) 작년 중에 전임된 경리계장 숙직당번시 비품도난의 변상을 급사의게 시켰는가하면 금년에도 숙직 중 시계 전화기 등을 도난 당하였다.
- 7) 저번 목일지상에 보도된바 있거니와 인사취급에 있어서 해면 된 직원들의 이유를 보면 근로태만 운운인데 방금 말하였든 숙직불철저 직원과 술값외 상으로 공문서를 잡혀 물의를 일으킨 강모직원 등은 하등의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
- 8) 또 한가지 참고로 말해 둘 것은 교육청은 상부에서 압력을 가지고 내려미는 물품구입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이런 점등은 우리의회의 결의로서 시정해야 되리라고 본다.
- 9) 숙직일지 수일분이 정리안되어 있는데 주무계에서는 이것을 보통으로 생



각하고 있으며 이 점 도난사고 빈번한데 비추어 유감스러운 일이다.

10) 서무계장은 현금 단신 부임으로 숙직실을 자기방처럼 전용하면서 가족 부임여

비까지 타먹은 예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 본청은 월말이 가까이 오면 다른 지출을 억제하면서 까지 직원봉 급 지

출에 전력을 경주하는데 교육청은 이와 정반대로 있는 돈도 당월 봉급을 천 연 시

키고 있으니 너무 작란이 심한 것이다.

11) 그리고 90년도 일시차입상황을 은행측과 대조 검토하여 본 결과 총 차입 액

25,350,000환 중 18,800,000환은 정당한 것이고 6,550,000환은 적당히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12) 91년도일시 차입총액 11,250,000환 중 상환액이 10,500,000환으로 750,000 환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채무액이 전혀 없다고 하니 이는 어떠한 이유

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참고 발언한 바이나 90년도 결산서 자체를 사실 그대로 맞

추어 갱히 제안하도록 반환조치 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 학무과 소관

1) 금년도 취학적령아동 4,100여명 중 3,700여명이 취학하였는데 월구 취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하여 일시 교육청은 일대 수라장화 하여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 역시 90여명의 월구아동이 있었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솔직한 답변 요망한다.

2) 학교측 숙직료 1월 분이 6월에야 지출되었으니 이것도 모순된 점이다. 시정하기 바란다.

- 본청관계(사회과 소관)

1) 5월 10일자 도착한 난민용 구호양곡 배급사무 상황을 검토하여 볼 때 그

인원책정이 1725명분인데 각 동에 실지 배급한 것이 1,023명분이고 702인분을 비상용으로 비치하여 두어 그 후 1개월도 못되어 전부 배급하여 버리고 36kg밖에 안남았다. 죽교3구동에 할당된 수량이 63명분인데 반수가 42개반이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보드라도 변방동은 이 적은 수량으로 골치를 앓는 형편인데 702인분을 비상용이라고 비치시켜 적당히 배급한 다는 것은 이해키 난한 처사다.

2) 작년12월 10일자 천주교 구제회본부로부터 배정된 옥수수가루 2,500포대의 배급상황을 보면 천주교회의 근본취지를 몰각하고 조급히 배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실례로서 각 동 배정책정한계선인 호별세 등급3등부터 5등까지 10,325세대 중 3,000세대를 삭감하여 1,709포대를 배부하였는가하면 하등근거도 없는 10여 단체에는 각기 단체로부터 신청한 인원대로 조사도 않고 배정하였다는 것은 의아스럽기 한량없는 것이다.

유독 동과 노동계에 비치되어 있는 각 단체의 인원대장과 대조도 않고 막연히 유명인구 그대로를 시인하였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을 여실히 폭로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각 단체에 배급하였으면 이에 대한 배급상황 보고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않고 있는 것이다.

#### ◇의장 김 삼 성

- 법정시간인 하오 4시에 임박하였으나 감사보고가 종료되도록 까지 무제한 시간 연장할 것을 선언

#### ◇이 정 권 의원 보고 계속

3) 그 후 제 2차 분으로 옥수수가루가 3,500포대 배정되었는데 이의 배급상황도 1차 분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이 점 심각하게 말한다면 대외적으로 악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신중을 기하겠으나 모순된 점이 허다한 것이다. 특히 고아원에 배급한 것은 전량을 팔아먹은 것이니 더욱 일반의 비난이 자자한 것이다. 앞으로 사중(이와 같은)배급을 난민위주로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4) 재건 주택관계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5) 2월 20일자 노동관계임원선거에 관한 지시문이 취급자의 책상에 낫잠 자

고 있었다.

- 6) 보건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방역용 분산기 11대를 각 동에 배당하여 수시 사용 하도록 하여주었으면 쓰겠다.
- 7) 빙과 제조업자의 영업대장 미정리 분을 조속 정리토록 단속하기 바란다.
- 8) 아이스끼기 저는 삼일전 소독실행을 요망한다.
- 9) 끝으로 발언고저 하는 바는 제반공문서처리는 신중을 기하여주기 바라며 특히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일자 정정, 액수 정정 등 삼가 하여주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보고

- 1) 90년도 교육위원회 경리상황은 이정권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을 너무 난용(남용)한 것이 사실이며 91년도도 역시 시정한바 없다. 일례를 들어 사무비의 소모품비 등 5개월간에 다 써버렸으니 앞으로는 여하히 할 것인지 우려되는 바이다.
- 2) 시립병원의 약국장을 감사한바 있었는데 약품의 장부상잔량과 실지수량이 부합되었었다. 그런데 약국장의 천장이 비가 오면 세는 형편이었는데 오천원 가량 소요하면 수리가능 이였다고 보아졌었다.
- 3) 금년 5월말까지 시립병원에서는 28만환의 세입을 냈다함은 일반병원과 비교하여 너무 수입을 경홀시(가볍게 보다)한 것 같았다. 앞으로 시정을 하여 주기 바란다.
- 4) 비품은 대장정리가 불충분하였다. 각 동의 감사 결과는
- 5) 호남동 공채소화성적이 극히 부진상태이다
- 6) 만호동 잘되었다.
- 7) 죽교4구 무슨 사무를 보고있는지 분간 못할 정도 이였으며 구태의연한 상태이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 8) 죽동 동장 성실하여 동사무 전반에 걸쳐 지극히 양호하다.
- 9) 죽교5구 옥수수가루 배급의 공문이 없었고 구두지시였다고 하니 의심스러웠다.
- 10) 죽교1구 공채 12,000환을 유용하였다. 그 이유는 적십자회비를 조기 납부하여 시상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 11) 죽교2구 찬양할 정도가 못되었다.
- 12) 죽교3구 문서 보존대장이 없었다.

- 13) 대성병원 잘되었다.

◇명 남 철 의원 보고

- 1) 교육위원회의 존립목적이 제 2세 국민의 육성일 것이며 금년도의 특부를 시킨 이유도 신설국민학교의 신축이 목적이였을진데 이의 집행내용을 보면 순전히 술과 밥으로 소진하여버렸으니 유감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 4290년도 결산서는 사실 그대로를 계상하에 제안하지 않으면 심의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 3) 각 국민학교에서는 사친회비 외의 타잡부금은 일절 징수 안 하여야할 것인데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 소모품비를 경상비로 유용하고 용지 등을 배부 않기 때문에 자연 타잡부금을 징수하는 형편이다.
  - 4) 금년 2월 22일자 지출 결의서를 보았더니 내무 문사연석 회의시 접대비라하여 27,000환을 부당 지출한 예도 있다.
  - 5) 사회과의 군경원호 부조금 등의 지급상황을 보건데 부정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 이의 지급책임이 시장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부하(책임을 짐) 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진다

◇김 창 희 의원 보고

- 1) 교육청예산에 계산된 극빈 아동에 대한 교과서무상배부 문제가 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 신입아동 취학통지를 그 시기가 임박하여 발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 3) 각 지출증빙 서류의 불합리한 건수는 일일이 매거키 곤란한 정도로 많았었다.
- 4) 직원의 단속에 있어서는 신상필벌주의를 실천하기 바란다.
- 5) 교육청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고 보아진다.

◇김 경 인 의원 추가 보고

- 1)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에게 위임된 군경원호회 사무에 있어서 우리 회의 권한으로 사무감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매년 그 회비를 각출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라도 그 체계와 운영방침 등을 알아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 바 시장님의 영단이 있으시면 다음 몇 가지의 질문에 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이다.

가) 회비 부과 및 조정의 법적 근거여하

나) 조정액의 배시유무 여하

다) 징수액 및 미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

라) 지출액의 내용을 항목별로 말하여 주기 바란다.

- 2) 옥수수가루 배급 문제에 대하여 경동교회 관할 10개 동에서는 동장들이 자기운동원들에게 정실 배급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의 진상여하
- 3) 고아원 등에서는 이 옥수수가루를 타처에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바 이의 수습을 여하히 할 것인가?
- 4) 저번 교육 위원회의 도정감사반과 옥신각신하였다는 내용을 차후기회에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 단기 4290년도 목포시각종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명 남 철 의원

- 교육위원회 결산 안만은 일응반려하여 사실 그대로를 작성 제안하도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 삼청이 있음

◇강 영 락 의원

- 우리 의회로서 권리와 의무(의무)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될 것이다.
- 교육위원회 결산만을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비트(비토)한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니 본건 일응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개의하여 재청 삼청이 있었음

◇이 정 관 의원

- 동의에 찬성 발언함

◇의장 김 삼 성

- 동의 철회 중용하다.

◇명 남 철 의원

- 동의 철회함

◇강 영 락 의원

- 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됨

◎ 부의안건 3, 4, 5, 6, 7, 8, 9, 10항

◇김 성 균 의원

- 각기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 삼청이 있었다.

-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됨

◇의장 김 삼 성

- 산회 선언하다.

( 하오 5시 50분 현재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6월 28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 83회 제 4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1년 6월 30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단기 4291년 6월 30일 하오 7시 30분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의원 김남진, 김성균 의원
6. 출석 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서무과장 차영균, 학무과장 조성덕

###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내무위원회 회의 사항 종합 심의보고
- 2) 제 14회 시정감사 처리 전말 보고

#### ◆ 부의안건

제 3차 회의시와 동일함

### 8. 토의사항

#### ◎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 종합심의 보고

#### ◇김 일 섭 의원 보고

- 1) 단기 4290년도 각종 회계 결산 안은 각각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으나 교육위원 특별회계 결산 안에 대하여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3대1로 원안통과. 내무위에 회부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예측과 질의

응답이 종료 후 재심기로 일응 보류 하여두었습니다.

- 2) 단기 4291년도 제 5회 추경예산안,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제 2회 추경 예산안, 도선비 특별회계 등도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하였습니다.
- 3) 교육위원회 재산 취득 안 및 재산 조례 안은 보류하여두었습니다.
- 4) 호남동민으로부터 제출한 건축관계 청원서는 본회의 종료 후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실정을 조사 후 처리하기로 일응 보류 하여두었습니다.

#### ◇강 영 락 의원

- 내무위원회의 심의보고에 이의가 개재되었다. 그 이유는 교육 위원회의 결산 안에 대하여 문사위원회에서 원안통과 회부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다 함은 내무위원의 월권이며 독선적이고 그 무능을 폭로한 것이라 규정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김 일 섭 의원

- 내무위원에서도 이 안건을 위요하고 장시간 옥신각신 논의하다가 그러한 결론을 보게 된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 ◇김 상 대 의원

- 강영락 의원 발언의 찬성 발언

#### ◇강 영 락 의원

- 본 의원은 문교사회의 전문위원도 아니고 교육청 감사반도 아니나 전문 위원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몇 사람의 내무위에서 보류시킨다는 것은 유감천 만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회기최종일인 금차 회의에 이르러 본 회의에 상정도 안 시킨다는 것은 몇 몇 의원의 권리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 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 ◇이 정 권 의원

- 전차회의의 감사 보고시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거니와 90년도 교육 위원회 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무려 일천여만원의 거액을 의회의 의결도 없이 과목유용을 하였던 것이다.



- 이러한 결산 안은 심의의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원안 그대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강 영 락 의원

-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건을 본 회의의 심의도 없이 환원시킨다는 것은 위법이다.

#### ◇명 남 철 의원

- 본 건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음은 감사위원을 불신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 ◎ 제 10회 시정감사 처리 전말보고

#### ◇하 시장

- 당시 자치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20여일의 장시일에 공(巨, 시간적으로 일정한 동안에 걸쳐)하여 시정감사에 당하여 주신 의원제공(존칭)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답변은 총무, 산업, 사회, 재무, 건설, 호병과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1) 김경인 의원과 김성균 의원 질문의 직원신원보증문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인이 최고 17건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도 등을 세밀히 재검토하여 조치하려 합니다.

- 2) 김상대 의원 질문의 신원보증인 외지이거 자에 대한 조치는 보증인 자신이 광주지법 관내에 거주하면 무방하다고 보아지며 재산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 3) 김경인 의원 질문의 각 동 재산의 시 이관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수속비가 상당액에 달할 것임으로 차후 예산에 계상하여 선처하겠습니다.

- 4) 국채증권의 미교 부분은 세밀히 조사한 후 각 해당자에게 교부하겠습니다.

- 5) 국채증권의 수불대장도 가일층 연구하여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 정

비하려 합니다.

- 6) 김성균 의원 질문의 공채소화문제는 앞으로 독려 방법을 바꾸어 천환 이상 미납분에 한하여 전청원을 동원 건수책임제로 총력량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 7) 김경인 의원과 김성균 의원 질문의 사유재산 매각 대금 미징분의 독촉문제는 차후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의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8) 김상태 의원이 지적하신 임대 계약서의 내용 불비 문제는 담당 직원의 사무태만으로 기인한 것인바 즉시 추완조치 하겠습니다.
- 9) 김경인 의원이 말씀하신 도 국비의 보조지령서의 불완비에 대하여는 차후 관계 직원을 감독 그 대장의 완전정리를 기하여 일목요연하게 만드려 합니다.
- 10) 그리고 지출원과 수입원의 긴밀한 연락에 대하여는 현금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변함없이 연락을 취하려 합니다.
- 11) 도선장 유류 창고 신축 문제는 재정형편으로 확답키 곤란하나 앞으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12) 소방시설비의 소모품비 유용질의에 대하여는 부득이 유류대로 유용 하였습니다.

- 김성균의원 질문의

- 1) 시정계 직원의 증원 문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속기사를 채용하여 보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공보계의 사진부설치는 앞으로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 3) 세입면의 등폐에 대하여 말씀이 계시나 앞으로 사업장에 치중 노력하겠습니다.
- 4) 동정 운영 문제는 앞으로 연구하여 보겠으나 현금과 같이 동장 무보수상태가 계속하면 불가피한 형편으로 보아집니다.

- 김상태 의원이 지적하신

- 1) 관인취급이 조홀하여 백지날인을 받아 가지고 다닌 사람이 있다 함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차후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 2) 확성기 수리비 및 연단 제작비과다 지출에 대하여는 실은 확성기가 원래

고물이 되어서 불가항력이었으며 연단은 취급자가 없으니 그 경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 김일섭 의원의 해수욕장 건물 문제는 확실히 조사한 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 강영락 의원이 말씀하신 통역생 채용 문제는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선처하겠습니다.

- 그리고 각 동을 감사하신 여러 의원들의 보고 말씀에 의하면 비위사실이 허다하나 즉시 취급자로 하여금 시정혹은 추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상세 초안 참조)

#### ◇산업과장 김 연 수 답변

- 김경인 의원이 말씀하신 4290년도 시장비 예산 50만환에 36만의 미집행 이유는 시재정 관계로 그리되었으나 신년도 예산 면에 반영시켜 추진시키겠습니다.

- 김상태 의원이 지적하신 향동시장 전등료 채불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는 시 예산에 월2만환 밖에 계상 안된 것으로서 남전 시장과 시 3자 간에 형언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으나 결국 예산 초과액분은 시장부담으로 하계끔 낙찰을 보아 해결을 지었습니다.

- 박두순 의원이 질문하신 각 시장의 서류 및 장부 처리의 소홀한 점에 대하여는 불원 주무과로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경리 방식 등의 통일을 기하려 합니다.

- 김일섭 의원이 말씀하신 1) 연동시장 주임 근무향상촉진 문제는 현재에 와서는 본청 재근시보다 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석유배급을 일반 수용가에 알선여부문제는 현금 시판가격과 별무 차이인 것이나 앞으로 도당국과 절충하여 실시하려 합니다.

- 김상태 의원이 지적하신 권농일에 과 계장 등 불참자 허다하시다는 말씀

은 마침 당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관외여행자도 있었으려니와 주무과의 주지불처저에 기인한 것이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강영락 의원이 말씀하신 유달산 녹화 계획 및 단계연료 전화 추진문제는 유달산은 암석지대의 급경사지가 많음으로 완경사지대를 이용하여 매년 조림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조(매일아침) 계원으로 하여금 순시케 하여 고목보호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계연료 전환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방침에 의한 임산연료 방임엄금 취체(단속) 실시 중에 있으므로 각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하단계연료 생산량 및 탄질관계 발언 생략)

- 김일섭 의원의 일반귀속농지 상환량의 저하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상의 임대가격을 산출기초로 전국적으로 적용시키는 관계상 재고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 강영락 의원이 질문하신 1) 문서(예규철) 정리에 대하여는 즉시 추완 시켰습니다.

2) 거년 추곡수납 성적 불량한 이유는 산업과 전 직원이 총동원하여 독려에 당하

였으나 야채파종이 거개인 소치로 대금수입이 적었던 관계입니다.

3) 정부양곡 보관 창고의 이고 문제는 보관 업자에 연락하여 선처하겠습니다.

- 김일섭 의원이 말씀하신 정부양곡 추징금 정리문제는 전 86, 87, 88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배급하였으나 배급 후 소급인상 지시에 따라 추가 조정된 것으로 당시 분은 추가예산을 계상하여 청산하겠으나 타 기관분은 중앙 각 부문에서 청산 할 것입니다.

- 강영락 의원이 질문하신 종모우(종우) 일두의 관리상황은 현재건존 하오며 앞으로 수시 감시하겠습니다.

- 박두순의원이 지적하신 사료의 부정배급 문제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천철수 의원과 김일섭 의원이 말씀하신 가축시장문제는 전기시설과 수도 시설 등은 추경 조치 후 실시하겠고 확장 문제는 신년도예산에 계획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규 성 답변

- 이정정 의원이 말씀하신 1) 난민용 구호 양곡 배급문제에 있어서 종전에는 구호양곡 배급을 일반난민용으로 6할 내지 7할을 보고 통과난민용으로 3,4할을 구분하여왔는데 지난번 양곡은 도 당국의 통첩에 의하여 당분간은 구호양곡이 없을 것이니 맥령기(보리고개)까지 확보하여 두었다가 항구적인 구호를 실시할 작정이었으나 뜻과 같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량 그대로를 각동에 배급할 계획입니다.

2) 옥수수가루 제 1차분 배급경위에 대하여 작년 12월 17일자 제 1차분으로 2,500포대를 인수하였는바 천주교구호회 본부로부터 대한노총 목포지구 연맹으로부터 배급 시청이 있으니 특별배려 하라는 서신을 접할 당시로서도 이에 응하여 배급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는바 이것을 도화선이 되어 각 노조 유사단체나 유족회, 상무회 등에도 배급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각기 신청서가 들어오면 세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그대로 인정한 점과 노동계에 비치한 서류 등을 조사 안 하였다는 점은 너무나 우리가 이 사무를 조홀히 취급하였다고 자인하는 바이며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웁니다.

그리고 배급전말 등을 사후에 안 받았다는 것도 각 대표자를 너무 믿었던 소치이나 즉시 최측하여 추완하려 합니다.

제 2차 분은 5월 14일자로 3,500포대를 인수받았는바 산정동교회 도 신부로부터 각 보육시설에도 특배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도 신부와 경동교회 김신부의 합의를 얻어 단행한 것 입니다마는 모처럼 우리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줄절한 방법과 무능한 소치로 본말의 취지를 몰각하고 이처럼 의회측의 지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하여 지극히 죄송하게 여기는 바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처분 하였다는 분에 대하여는 즉시 환원 조치하도록 강력 지시하겠습니다.

- 사회과 보건계 관계 예방약품 효력 실기에 대하여 예방약품이라 함은 주로 예방주사약을 말하는데 예방주사는 시내 전반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시로서 비상용으로 약간의 약품을 보유하여 두는데 보유분에 대하여서는 불의의 전염병이 발생하였을시 인근 주민에 재실시의 필요가 있을 시, 도와 연락하여 약품을 배당 받아 실시하면 시일관계로 실기되어 예방에 지장이 있으므로 보유하여 두었다. 이제나저제나 하다 실기된 것이나 차후 주의하겠습니다.

- 분산기 현재 재고량은 11대나 사용가능 분은 4대에 불과하여 동에 비치하여 둬은 곤란한 형편입니다. 빙과상 허가대장 정리에 대하여 빙과는 절기 영업으로 영업을 중지하면 휴업신고를 하고 개업할 시 개업 신고케 되었는데 이러한 절차는 취하여졌음 대장에만 기재가 되지 안 한 것을 조속 정리하겠습니다.

빙과(아이스케기) 저분 소독에 대하여 저분 소독에 대하여서는 상시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주의를 시키며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명남철 의원이 지적하신 군경원호회 관계는 삼방의 서류가 취합되면 상호 비교하여 선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 병 열 답변

- 김경인 의원이 말씀하신 재무과 직원의 공금유용 분에 대한 처리상황은 1인은 변상조치 되고 3인은 쥘석 판결로서 승소를 하게되었습니다.

- 김일섭 의원 발언의 어업세 문제는 본인이 직접 출장하여 조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김상태 의원이 말씀하신 가로등 복구 계획에 대하여는 이번의 추경예산에 계상 조치하겠습니다.

- 천철수 의원이 발언하신 일본송 카부(모퉁이)부근의 가로등 설치 문제는 현재 전주가 없어서 곤란한 형편입니다.

- 김경인 의원이 지적하신 1) 수특 결산서에 나타난 국고보조 차이점은 취급자의 사무착오로서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 2) 수도 사용료 징수 철저에 대하여 징수 사무를 재무과에 이관 하였으니 앞으로는 잘되리라고 믿어집니다.
- 3) 영업용과 가정용과의 조절은 세심시정 하겠습니다.
- 4) 세멘트 보관창고 건축문제는 동감입니다 마는 예산관계로 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 5) 흙관을 조절하여 만들고 타 공사를 추진하였으면 쓰겠냐는 문제는 이는 국고보조로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중앙의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이니 만치 시임의로 추진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 강영락 의원 질문의

- 1) 도로포장 질적저하 문제는 당시뿐만 아니라 타도시도 역시 동일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왜정시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제조한데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미팔균에서 잉여된 물자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리 됩니다.
- 2) 요즘에 빈번히 발생하는 수도전 절단사태는 발견즉시로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 3) 수원지부근의 공동묘지화 문제는 간수를 단속하여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 4) 수원지부근의 산림녹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호적병무과장 정 태 로 답변

- 김경인 의원 질문의 제 증명 발행 시 공채첨가소화에 대한 문제는 주로 신원에 관한 증명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국채의 첨가소화를 하든 것을 공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김성균 의원 질문의 호병과 전용적인 분치 문제는 동감입니다 마는 여러 가지 애로가 개제되어 있어 곤란합니다 마는 현재 과실을 본관으로 옮기자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 삼 성

- 오전 회의중지 선언하다. ( 하오 1시 5분 )

- 회의 속개 선언하다. ( 하오 1시 35분 )

◇박 세 문 교육감 답변

- 1) 숙직근무 여행(열심히 행함)은 앞으로 가일층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2) 주간 직원들의 영화관 출입문제는 발견즉시 차단하고 아울러 적극단속하겠습니다.
- 3) 교과서 무상 배부지연은 절실히 느낍니다 마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4) 보조금불입 지연 이유는 토지소득세환부금으로서 연락지연과 취급자의 사무태만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 5) 각종 찬조금 과다지출문제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극력 억제할 방침입니다.
- 6) 이정권 의원이 지적하신 특부유용 문제는 시인하는 바이나 재정부족보조가 근소하여 학년초에 부득히 유용하였으나 조속한 시일내 환원 조치하여 해결하려 하오니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7) 취학아동 월구문제는 금년도 78명중 일부는 환원조치하고 기타는 취학에 응하지 않아서 두통거리입니다.

◇김 상 태 의원 질문

- 입주집(술집)에서 말썽거리가 된 강모직원을 여하히 조치하였는가?

◇박 교육감 답변

- 비행이 없이 착실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 경 인 의원 질문

- 도정감사반과 옥신각신 하였다는 경위를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박 교육감 답변

- 도정감사반 3인이 래칭하여 직원인사 관계서류를 제시하라는등 하여 거절하였더니 그러한 말이 생겼으며 결국 일시오해로 생긴 것이지 별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정 권 의원

- 90년도 재정부족보조가 과소하여 유용하였다하나 이유가 안된다.
- 그리고 작년 10월 16일자 교직원 여비 20만환을 삭감하였는가 하면 정당이 출장한 여비를 지출 안는등 모순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김 경 인 의원

- 국채증권 미교부분에 대하여 끝까지 조사하여도 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를 국고로 납부 할 것인가 시비로 불입시킬 것인가 한계를 말하여주기 바란다.
- 군경 원호회비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후기회에 해명하여 주기 바란다.

◇김 상 태 의원

- 온금동의 풍수해구호금의 공제액은 어느 시기에나 반환조치 할 것인가.
- 이정권 의원의 보고시에 드러난 옥수수가루의 단체배급상황과 마대 회수 상황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사회과에 피원호자 대장이 비치 안되었다는 것은 유감이며 구호자 선발에 있어서 양노원은 대상이 되고 모자원은 안되었다는 것이 이해난이고 고학생회 같은 곳도 동정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시내 흥행장에 대한 단속을 바란다.
- 특히 하절기의 선풍장치와 통풍장치 및 정원제한 등에 주력하여 주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1) 직원 출장명령기간에 있어 여비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 의연하니 이의 시정을 바란다.
- 2) 특별판공비의 경조 금지출등의 그 지위의 고하여하를 막론할 일정한 선을 두어 공평히 지출하기 바란다.

- 3) 각시장 포탈료징수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라.
- 4) 구호양곡 배급은 동장등의 선거운동제물이 될 우려가 있으니 시에서 직접배급하라.
- 5) 호병과에서 제증명발급시는 특권층에 대한 수수료 불납을 지양시키는 방법으로 사무실 출입을 금하게 하라.
- 6) 호별세 자력(자원)조사시 권형사정에는 시 일반적으로 공정을 기하기 바란다.
- 7) 교육위원회 소모품비에서 접대비가 지출되었는데 이의 시정을 바란다.
- 8) 교육감실에 첨부된 여러 가지액자를 공매처분할 용의는 없는가.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김경인 의원질문의 국채증권 미교부분은 끝까지 조사하여 본인이 만나올 적에는 상환기까지 시에 보관하였다가 의회의 결의를 거쳐 시 접수입으로 재산취득 수속을 밟겠습니다.
- 김상태 의원질문의 온금동 풍수해구호금 공제사건은 동에서 강요하였다면 반환조치 하는 것이 온당하나 측문한바 본인들이 자진협조하였다 합니다.
- 조양순 의원질문의 여비지출에 있어 출장기간제한은 적극억제하여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 경조금지불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균등지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 규 성 답변

- 1) 김상태의원 질문의 1) 옥수수가루 단체배급분의 배급전말서는 취합되었으나 내용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 2) 구호 대장비치문제는 시민들의 이동이 빈번하고 생활상태의 변동이 극심함으로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 3) 모자원과 고학생회의 요구호자책정은 차후 기회에 고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 병 열 답변

- 호별세부과의 공정을 기하려면 각 시민이 그 주거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여 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호적병무과장 정 태 로 답변

- 제증명 수수료의 무료발급문제는 소위 권력층에는 없고 건달패가 간혹 강요하는 예가 있으나 차후 가일층 단속하겠습니다.

◇서무과장 차 영 균 답변

- 교직원 여비 20만원을 삭감하였음은 교장들의 선진지 시찰여비 지출관계로 부득히 그리 되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직료의 채불문제는 앞으로 가급적 지연 안 시키겠습니다.

◇교육감 박 세 문 답변

- 소모품비 및 접대비의 지출을 적극 억제하겠으며 국민학교 수용비 배정은 균등을 기하겠습니다.

◇명 남 철 의원

- 1) 현재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등이 무려 47개나 되니 불필요한 전등을 폐등시킬 용의는 없는가
- 2) 연료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편이다.
- 3) 유달학교가 교사는 작년 중에 착공하여 우금완공 안되었음은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4) 모 의원의 보고에 산업과 축산행정에 사료의 부정배급이 있다하니 유감이다. 앞으로는 도살에만 힘쓰지 말고 축산장려에 힘써 주기바란다.
- 5) 공설시장 포탈료 징수에 있어 향동 시장은 시장내에 장소가 없어서 가로 주변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포탈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정 응 표 의원 질문

- 각 동의 공채소화사무 취급상황이 각양각색이니 이를 일률적으로 지시하여 통일을 기하여주기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 보관동 재건축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설명을 요망한다.

◇김 상 대 의원

- 내용설명 ( 생략 )

◇의장 김 삼 성

- 회의 법정시간인 오후 4시가 박도하여지니 시간제한 없이 계속할 것을 선언

◇장 총무과장 답변

- 박두순 의원이 지적하신 대성2구동과 동명동 직원의 교체 및 정응표 의원이 말씀하신 각동 공채사무집행체계의 통일은 래월중으로 선처 하겠습니까.

◇사업과장 김 연 수 답변

- 1) 사료배급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각동을 통하여 유루없음을 기하겠습니다.그리고 축산동업조합의 인사문제는 시에 그 결정권이 없는것이니 의회측의 의견을 건의하여 종용하겠습니다.
- 2) 명남철 의원이 발언하신 항동시장 포탈료징수문제도 적당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청학무과장 조 성 덕 답변

- 강영락 의원이 말씀하신 극장시설 및 정원초과 문제는 양극장의 지배인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실현 못된 것을 미안히 생각한다 앞으로 가일층 단속하겠습니다.

◇이 정 권 의원 질문

- 1) 월구아동문제로 인한 취학당시 혼란야기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 2) 옥수수가루 부정배급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망한다.

◇정 응 표 의원

- 유달산의 소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관리책임은 누구인가 유달산의 돌이 점차 떨어져가는데 이를 방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 두 순 의원

- 용당 도선장의 사무감사당시 밝혀진 일이나 유류대금의 체불로 인하여 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하니 이의 개선책은 없는가

◇조 학무과장 답변

- 취학당시 혼란을 야기한 것은 월구아동을 적극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 그리되었다.

◇산업과장 김 연 수 답변

- 유달산은 시유림과 귀속림으로 되어있고 산의 뒤는 손종신씨 개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정권 의원이 말씀하신 옥수가루는 7월 15일 까지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도선장유류대 지출지연은 시 재정형편상 부득히 그리되었으나 차후로는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강 영 락 의원

- 질의 종결동의에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십분 간 회의중지 선언하다. ( 현재 4시 20분 )

- 속개 선언하다. ( 4시 30분 )

◇김 경 인 의원 긴급동의

- 저번 사무감사 당시 군경원호회 관계를 감사할 때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에 요청하였으나 도의 지시라 하여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당무자에게 군경원호금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은바있으나 이 역시 모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령집을 샅샅이 찾아 보았으나 이러한 법령은 찾을수 없고 필시 기부금통제법에 의한 내무부장관허가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우리의회로서 이의 정체의 파악을 함으로서 만약시민의 협조가 부족하다면 이를 어

디까지나 여론화 시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시키는 방도도 있을 것이다. 군 경원호회 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부정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의 집행내용을 알고자 함인 것이다. 본 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관계장관에게 감사에 응하도록 요청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강 영 락 의원

- 일용도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 문제는 목포에 한한 문제가 아니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경원호회 이 상 환 주사

- 참고발언
- 김경인 의원 동의를 관계당국에 일용 문의하도록 할 것으로 개안(개의)
  
- 표결결과 - 만장 일치 가결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각종회계 세입세출결산안

- 1) 일반회계
- 2) 수도특별회계
- 3) 동정 특별회계
- 4)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 5) 재건축주택특별 회계
- 6)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강 영 락 의원

- 교육위원회 결산안은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하였다하나 회의규칙에 의거 의원 1/3이상 동의로 본회의에 환원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7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가결

◇김 상 대 의원

- 전기 6항중 교육위원회 결산안을 제외한 5건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1) 단기 4291년도 제5회 목포시일반 회계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2) 단기 4291년도 제2회 목포시수도 특별 회계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3) 단기 4291년도 제2회 목포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4) 단기 4291년도 제1회 목포시 도선비 특별 회계세입세출 경정예산안
- 5) 시립목포병원 병동 매각 처분안
- 6) 자동차 적재선 매각 처분안
- 7) 도장창고 매각 처분안
- 8) 시유재산 취득의 건 (도장)

◇명 남 철 의원

- 전기 8건 일괄하여 원안 무수정통과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삼청이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다.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 위원회 결산 승인안

◇이 정 권 의원

- 의회 의결없이 일방적으로 예산항목을 유용지출한 본건은 심의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니 이를 원안 반송할 것을 동의한다.

◇김 경 인 의원

- 예비비에서 50만환을 지출한대로 결산되어있는데 이는 재정법상용인 안되는 일이다. 이 의원의 동의에 찬성한다.

◇김 상 대 의원

- 금반의 시정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회자체도 상당히 시정되리라고 보아지는 것이며 의회 측 부하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라도 관별로 축조심의하여 부분적 승인이라도 할 것을 개의합니다.

◇김 경 인 의원

- 문서 자체가 구비 안되어 있는 안을 심의 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이 정 권 의원

- 예산 관까지 유용한 안을 어떻게 승인 할 것이며 심의대상이 되겠는가.

◇서무과장 차 영 균

- 1) 예비비 지출승인은 경하였으나 사무착오로 그리 되었습니다.
- 2) 관 유용을 하였다고 지적하시나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다른 그릇된 점은 고사하고라도 예비비 50만원 의 지출 관계 등은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서무과장 차 영 균

- 관대한 처분을 바라지 않습니다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갈 용의도 있습니다.

- 주 → 본건 동의와 개의에 대하여

김경인, 명남철, 이정권, 김상대, 강영락 의원간의 찬부 발언이 있었음  
( 내용 초안 참조 )

◇정 응 표 의원

- 토론 종결동의에 이어 재청~7청까지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 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의원

- 개의와 이정권 의원 동의
- 철회신청이 유하오니 철회시키도록 할 것을 참고로 말한다. 전원 찬동.

◎ 목포시 교육위원회 재산취득 의견

◇김 일 섭 의원

- 작년도부터 본 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듭하여온 안 일진데 집행부 자체에



서 학교를 신축하겠다는 것이니 이 기회에 통과시켜줍니 좋을 것 같다.

◇강 영 락 의원

- 찬성 발언하다.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원안 무수정통과 동의에 이어 제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교육위원회 재산 조례안

◇의장 김 삼 성

- 본 건은 내무위에서 심의 보류중이니 심의 할 수 없으므로 보류할 것을 선언하다.

- 폐회 선언하다.

( 하오 7시 35분 현재 )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7월

시의원 김 상 대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서기 주 도 식